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

(25년-3차-재평가)

20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CONTENTS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5년-3차-재평가)

제1장 기관평가 개요 1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3

제2절 상위평가 재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6

제2장 상위평가 재평가 결과 11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13

제2절 상위평가 재평가 최종 결과 17

부록 27

부록1.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25년 3차) 29

부록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31

표 목차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5년-3차-재평가)

〈표 1-1〉 '25년 3차 재평가 대상 기관	6
〈표 1-2〉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항목	9
〈표 1-3〉 '25년 3차 기관상위평가 재평가 추진일정	10
〈표 2-1〉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재평가 결과	13
〈표 2-2〉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재평가 전·후 비교표	14
〈표 2-3〉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재평가 최종 결과	16
〈표 2-4〉 '25년 3차 기관평가 자체·상위평가 최종결과	25

그림 목차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5년-3차-재평가)

〈그림 1-1〉 출연연구기관 자체·상위평가 추진체계도	5
-------------------------------------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 자체평가(제10조), 연구기관 상위평가(제11조)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8.26)
- 「2025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24.10.31)

(3) 추진 연혁

-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등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16.3월)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평가 방안 마련 등
-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 제도개편 등을 담은 「'19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18.10월)
 -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한 계획서 수립·기관평가 수행 등
 -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
- 출연연별 R&R 이행 및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중심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수립('20.8월)
 - 출연연 연구성과의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여 지식의 창출을 넘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연구개발 유도
-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을 위한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0.10월)
 - '18년 제도 개편 이후, 경영성과계획서에 기반한 종합평가 체계 종료 및 기관운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항목 제외 등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위평가 간소화 및 전략컨설팅 도입 추진
-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서 수립단계 점검 강화 등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2.10월)
 - 기관운영계획서 상위점검 신설하여 기관의 R&R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성과목표 수립 유도(연구사업계획서는 전략컨설팅 제도 활용)
 - 부설기관 등 소규모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평가항목·방법 간소화 추진

■ 평가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 평가 등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3.10월)

- 피평가 출연(연) 출신 인사의 평가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평가위원 구성 미흡 시에는 평가 결과 불인정 및 재평가 가능
- 상위평가에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 평가지표 신설하여 평가위원 풀 확대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및 성과의 중복인정 방지 등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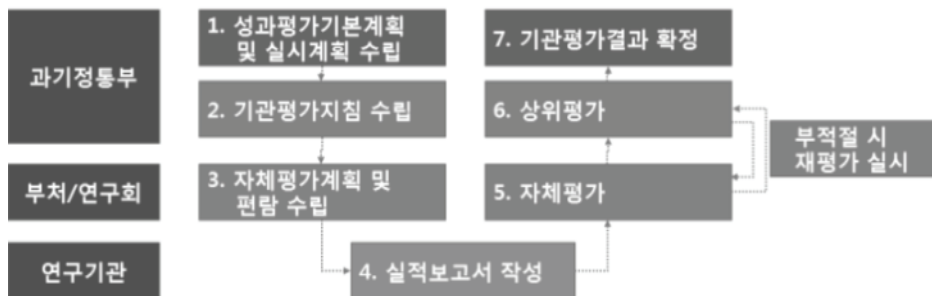
- 자체평가 위원 구성 시, 피평가기관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체평가의 전문성 강화
 - ※ 기관운영 평가 : 연구분야 전문가 포함, 연구사업평가 : 전략목표별 연구분야 전문가 포함
- 성과의 발생시기가 평가대상 기간에 속하는 성과에 한해 인정하고, 동일 성과에 대한 중복 인정(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동시 인정) 불가

2. 추진체계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既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달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

※ '25년 1~3차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연구사업평가) 수행('25.1월~'25.11월)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와 운영·결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



〈그림 1-1〉 출연연구기관 자체·상위평가 추진체계도

제2절

상위평가 재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25년-3차 상위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평가가 결정됨에 따라 재평가에 대한 사항만을 작성함

1. 추진방향

□ 재평가는 상위평가 결과, 자체평가 재평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평가 실시

- (재평가 요건) 상위평가위원회에서 ①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로 평가(상위평가 점수 70점 미만) 또는 ②자체평가 오류 수정 시 자체평가 등급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③자체평가위원 구성 미흡, 핵심정보** 누락 사후 적발 등 기타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일부 성과목표의 평가 점수 및 등급 조정 시 자체평가 등급 조정(보통 → 우수, 우수 → 보통 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대·내외 지적사항 등의 평가 정보

- (재평가 방법) 출연기관의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서면평가 위주로 자체평가 재평가를 실시한 후,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재평가의 적절성 점검(4주 이내, 위원 섭외 기간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

① 상위평가 지적사항 중심으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② 자체평가위원 구성 미흡으로 재평가 시 해당 평가위원이 참여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자체평가 재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결과 상위평가의 지적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자체평가 점수(등급)을 조정 가능(필요 시 관계인의 의견 청취)

2. 평가대상

□ 평가대상은 25-3차 기관운영평가에서 재평가가 결정된 1개 기관

〈표 1-1〉 '25년 3차 재평가 대상 기관

평가유형	부처	연구기관
기관운영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3. 25년 3차 기관평가 상위평가 결과 및 재평가 사유

(1) 25년 3차 기관평가 상위평가 결과

■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위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한국원자력의학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C (16.50)
	②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B (21.0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B (17.5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감점항목			
1. 평가보고서의 논리성·객관성		-7	미흡 (-3.50)
2.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2	미흡 (-1.50)
가점항목			
1.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미적용 (0.00)
점수 합계		100	62.75
상위평가 등급			부적절

(2) 재평가 사유

■ 핵심정보(채용비리, 연구비 횡령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납품비리 관련 판결 등)와 관련된 주요 자체평가 평가항목 중심으로 재평가 실시

- (감사원 지적사항) 지적사항 7건 중 '연구재료비 횡령', '인사업무 부당처리' 등 연구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처분('23.9월)이 있었음에도 실적보고서에 누락
- (납품비리판결) '21년부터 '24년까지 발생한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기관 신뢰도 저하)감점이 미반영

■ 자체평가측에서 평가과정에서 인지하였으나 자체평가 항목*에 점수 반영하지 않고 상위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확인

*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 감점(기관 신뢰도 저하,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등)

4. 평가방법 및 항목

(1) 추진체계

■ 상위평가위원회

- (구성) 평가의 연속성 및 일괄성 제고를 위해 1차 상위평가위원과 동일하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민간전문가),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공통항목)' 평가위원, '자체평가 운영·기관발전(임무달성)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총괄조정회의 등 전체 회의를 주재하여 상위평가 계획 및 방향 등의 결정
 - 부위원장은 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여, 위원 간 이견사항 조율 및 총평 등 작성
 - 기관 전담 평가위원(3인)을 중심으로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을 재평가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공통항목 평가위원 2인과 함께 재평가 관련 평가 의견을 논의·결정
- (역할) 자체평가 재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이의신청 검토, 평가결과 확정

(2) 평가방법

- (자체평가 재평가) 출연기관의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상위평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4주 이내, 연장 가능)
- (상위평가 재평가) 자체평가 재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
 -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두 항목(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②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에 대한 재평가 실시
 - 기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평가를 인정하고,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 판단

〈표 1-2〉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기관발전 방향제시의 적절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현안·문제점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가?	3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고유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3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5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실시되었는가?	15
감점항목		점검내용	감점
평가보고서의 논리성·객관성 및 이해 용이성		• 정성평가의견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7
		• 평가보고서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3
가점항목		점검내용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 자체평가 시 세계 유수의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는가?	+3

(3) 출연기관 평가점수·등급 조정·확정

■ 평가점수 조정 방법

- 자체평가 오류 및 객관성 부족 사항 등에 대해 상위평가에서 평가점수 조정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재평가 일정

〈표 1-3〉 '25년 3차 기관상위평가 재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25년 3차 상위평가 총괄조정 회의	26.01.28.(수)	25년 3차 상위평가 결과 확정 (재평가 실시)
25년 3차 상위평가 결과 부처 통보	26.02.06.(금)	
재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26.03.23.(화)	
상위평가위원회 서면검토	26.03.25.(수) ~ 03.31.(화)	상위평가 의견(안) 마련
상위평가 의견(안) 부처 통보	26.04.03.(금)	
이의신청 접수	26.04.07.(화)	
이의신청 검토	26.04.10.(금)	
상위평가 총괄조정 회의	26.04.13.(월)	이의신청 검토 결과 논의 상위평가 결과(평가의견, 점수·등급 등) 도출 및 재평가 결과 확정
상위평가 재평가 결과 부처 통보	26.04.20.(월)	

제 2 장

상위평가 재평가 결과



상위평가 재평가 결과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1. 기본 방향

(1) 개 요

- 기관운영 부문의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의 적절성을 평가
- 평가대상: 한국원자력의학원
- 평가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공통항목 및 기관전담 위원

(2) 평가 방법

- 부처·연구회가 수행한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점검

2. 자체평가 재평가 결과

-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체평가 재평가 결과

〈표 2-1〉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재평가 결과

평가유형	소관 부처	기관명	평가점수(등급)
기관운영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75.98(보통)

■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체평가 재평가 전·후 세부 결과

〈표 2-2〉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재평가 전·후 비교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재평가 전		재평가 후	
		등급	점수	등급	점수
공동영역 (17.48점/25점)	연구보안평가(5점)	-	4.03	-	4.03
	연구지원체계평가(3점)	-	1.00	-	1.00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심사(3점)	-	1.50	-	1.50
	공공기관 청렴도평가(3점)	-	2.36	-	2.3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3점)	-	2.66	-	2.66
	집중안전점검(5점)		항목제외		항목제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3점)	-	2.43	-	2.43
자율영역 (41.00점/50점)	우수기획력을 갖춘 R&D조직 확립(10점)	B	7.00	B	7.00
	방사선의과학 R&D 재정수지 개선(5점)	A	12.75	A	12.75
	의과학실증 및 방사능 재난대응 특성 역량강화(25점)	A	21.25	A	21.25
현안대응영역 (10.50점/15점)	정책향상대응(6점)	B	4.20	B	4.20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5점)	B	3.50	B	3.50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4점)	B	2.80	B	2.80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7.00점/10점)		B	7.00	B	7.00
가점		-	1.00	-	1.00
감점		-	0.00	-	-1.00
합계		보통	76.98	보통	75.98

3. 자체평가 재평가 점수 조정

(1) 점수 조정 개요

-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부족 또는 오류 등에 대해 상위평가 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점수 직접 조정 가능
-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감점항목 “기관 신뢰도 저하” 항목에 감점 부여
 - ※ 연구재료비 횡령(해임) 건에 대하여 감점에만 “-1점” 부여하고, 보고서 상 감사원 지적 누락과 채용 업무 부적정(불문경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미반영
- 이에 대해 상위평가위원회가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제시된 근거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자체평가결과를 직접 조정

(2) 상위평가 의견에 대한 자체평가 소명의견 검토

- 평가항목별 재평가 상위평가 의견 요약
 -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언론 보도 및 감사원 지적사항이 실적보고서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평가 항목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재평가를 요청하였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가 수정되어 평가결과의 정합성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재평가를 통해 연구재료비 횡령(해임)과 채용 부적정이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수정된 보고서에서 반부패·청렴 강화가 기관의 핵심 현안 및 발전방향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두 건의 중대 비위가 발생한 기관이 이를 스스로 발전방향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슈 발굴의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 (평가조치 이행실적) 재평가에서 감사원 지적 7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조치 이행실적의 근거가 되었으나, 채용 부적정 사안은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사안임에도 불문경고로 종결된 후 이행 완료로 처리되었는바, 형식적 조치 완료와 실질적 재발 방지 효과가 충분히 구분되어 검토되었는지 불분명함
- 부처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외부 지적사항 누락과 관련하여 재평가 시 “건전한 평가 문화 저해”, 감점 항목에서 “결과 확정 여부”, “중대성 여부” 등에서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초래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가 수정되어 평가결과의 정합성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출이 최초 제출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의 보고서 누락에 따른 추가 감점 부여, 뇌물수수·입찰방해 신고(1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추가 감점 부여 필요성이 인정됨

-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평가결과 종합분석” 의견을 보완 → 재평가를 통해 연구재료비 횡령(해임)과 채용 부적정이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보고서에서 반부패·청렴 강화가 기관의 핵심 현안 및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두 건의 중대 비위가 발생한 기관이 이를 스스로 발전방향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슈 발굴의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 (평가조치 이행실적) 해당 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요구사항 없이 완료 처리됨 → 평가조치 이행실적의 근거가 되었으나,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평가보고서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자체평가 점수 조정 결과

- 자체평가 감점사항에 감사원 지적사항의 보고서 누락(-2점)과 뇌물수수·입찰방해 신고(1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1점)하여 자체평가 총점을 75.98점에서 72.98점으로 최종 변경

〈표 2-3〉 '25년 3차 기관운영평가 재평가 최종 결과

평가항목		자체평가결과 점수	점수 재조정 결과
공통영역(25)		17.48	17.48
자율영역(50)		41.00	41.00
현안대응영역(15)	정책방향대응(6)	4.20	4.20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5)	3.50	3.50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4)	2.80	2.80
기관장기여 우수성과(10)		7.00	7.00
가점		1.00	1.00
감점		-1.00	-4.00
최종 점수		75.98 (보통)	72.98 (보통)

제2절

상위평가 재평가 최종 결과

1. 총평

【한국원자력의학원】

■ (전반 - 재평가 관련)

- 감사원 지적 사항(연구비 횡령, 채용 관련 문제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적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보고의 충실성 및 기관 신뢰도 측면에서 미흡함. 특히, 해당 사안들은 현안 대응 등 복수의 평가 항목에서 감점 요인에 해당함에도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됨
- 동남권의학원 사례의 경우 미확정 판결을 이유로 감점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안별 감점 적용 기준의 일관성과 논리적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적보고서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 언론 보도 등 기관 운영 차원의 중대한 사실이 누락된 점을 단순 실무 문제로 이해하는 등 재평가를 통해 일부만 수정한 것은 기관평가 제도의 엄정성, 신뢰성,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재평가 결과는 감점 반영이 제한적이고 평가항목별 적용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반부패·청렴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점과 형식적 조치 완료와 실질적 재발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하여 문제 인식, 책임성, 실효성 검증 관점에서 추가적인 점수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 기관발전방향 제시

- 문제점·이슈 발굴
 - 방사능 재난 대응 사례를 우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피폭 사건 중심의 사후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이를 기관의 체계적 대응 역량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단발성 사례 제시를 넘어, 사전 대비/사후 대응/환류 체계가 통합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1]에서 연구 기획 단계의 연구자 참여 및 피드백 제도를 제언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음. 연구와 진료가 선순환 하는 과학기술특성화병원 구현이 핵심 과제로 도출된 배경이나 기관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문제 인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기관발전 방향 제시

- 기관의 당면 과제 분석과 발전 방향 간의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 특히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본·분원 간 사업의 독립적 추진에 따른 재정 성과의 보완성 부족 및 수익모델 공유 미흡을 핵심 이슈로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 연계 방안 제언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 본·분원 통합 예산 및 재투자 메커니즘, Core-Lab 도입 등을 기관 발전 방향으로 제언하였으나, 해당 방안들이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임

■ 자체평가 운영

● 평가 운영

- 평가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운영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됨. 전체 평가위원 13인 중 5인을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별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정의되지 않아 역할 혼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이 서약서 제출 등 평가위원 개인의 자기 확인 및 개별 점검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해상충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평가조치 이행실적

- 상위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점검 실적이나 정량적 성과지표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확인되지 않음. 특히 위원 구성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구체적인 실행 근거 없이 해당 조치를 '완료'로 진단한 사례가 확인되어, 평가조치 이행 실적의 적절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및 이해 용이성(감점 항목)

- IAEA RoH 앵커센터 지정 성과가 [자율영역 3]과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 항목의 근거로 동시에 제시되어 동일 성과가 중복 활용되고 있음. 각 항목의 목적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목별로 차별화된 평가 의견 제시가 필요함
- 자체평가보고서 전반에서 평가 등급과 평가 의견 및 근거 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어 등급 부여의 논리적 근거가 불명확함 (성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가시적 성과가 제한적임에도 B등급 또는 A등급을 부여한 경우 등)

2. 자체평가 운영·기관운영 방향 제시의 적절성

① 기관발전 방향제시의 충실성

■ 우수한 점

-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해당사항 없음
-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 해당사항 없음

■ 미흡한 점

-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자체평가보고서, p.35)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우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피폭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를 기관 차원의 상시적·체계적 대응 역량 강화로 일반화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단발성 대응 사례가 아닌, “사전 대비·사후 대응-환류 체계”로 연계되는 대응 시스템 전반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 단순히 문제 인식을 현황 나열 수준에 머물러, 핵심이슈의 특정 및 원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자체평가보고서, pp.53-55) 방사선 재난 대응 책임 강화, 필수진료 공백 심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연구·실증 수요 증가 등 내·외부 환경 변화 요인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변화 요인 중 기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특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이 기존 성과목표 체계로는 대응이 곤란한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문제 인식과 성과 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보고서, p.61)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비율에 미달하고 있다는 현황은 제시되어 있고 직무 특성에 따른 구조적 제약과 일부 개선 방향은 언급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
 - (자체평가보고서, p.65) 성과목표 1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 연구자의 참여와 피드백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언급에 그쳐, 기관이 추구하는 ‘연구와 진료가 선순환하는 과학기술특성화병원’

구현 과정에서 왜 해당 이슈가 주요 과제로 발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문제 인식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 언론 보도 및 감사원 지적사항이 실적보고서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평가 항목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재평가를 요청하였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가 수정되어 평가결과의 정합성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실적보고서 제출 시점과 작성 과정상 제약을 감안할 때, 동남권의학원 관련 사안이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하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은 연구 재로비 횡령 및 채용 관련 문제로,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주요 현안으로 인식되어 실적보고서에 명시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주요 지적사항 관리 및 보고의 충실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제출이 최초 제출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외부 지적사항 제출이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및 현안 대응영역 등의 평가 항목에 영향을 복수로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해당 자체 평가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누락이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및 현안 대응 등 복수의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해당 영향이 평가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동남권의학원 사례를 고려하여 향후 기관 차원의 예방노력 등의 중대사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조하는 추가 보완이 필요함
-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 수립된 성과목표기관 당면과제 및 전략과 관련한 분석과 발전방향 제시가 이루어졌으나, 제시된 발전방향과 당면 과제가 정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자체평가보고서, p.73) 본·분원 간 사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재정 성과의 상호 보완성과 수익모델 공유가 부족하다는 이슈를 제시하고 복수에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으나, 본·분원 사업 통합에 기반한 구체적인 제언은 일부에 그치며, 그 외 내용은 일반적인 기관 발전 방향 제시에 머물러 있어, 당면과제로 제시한 이슈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방안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기관의 기능·역할과의 연계 측면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체평가보고서, p.73) 본·분원 간 ‘통합 예산 계획 및 재투자 메커니즘’ 마련, ‘코어랩(Core-Lab)’ 도입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방안이 기관의 중장기 전략 및 역할 수행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제시됨. 향후 차기 기관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가의견 반영 여부 점검을 통해, 추진 일정, 역할 분담, 기대 효과 등 실행 수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 재평가를 통해 연구재료비 횡령(해임)과 채용 부적정이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수정된 보고서에서 반부패·청렴 강화가 기관의 핵심 현안 및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두 건의 중대 비위가 발생한 기관이 이를 스스로 발전방향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슈 발굴의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②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 우수한 점

- 평가 운영의 적절성
 - 해당사항 없음
- 평가조치 이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미흡한 점

- 평가 운영의 적절성
 - (절차·체계보고서(상위평가용보고서), p.11) 자체평가위원회 추진일정이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주요 단계별 세부일정은 자료상 확인이 어려움. 이로 인해 이해관계 부존재에 대한 사전 점검, 소명기회 부여 등 평가위원 운영 절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
 - 특히, 평가의견(안)에 대한 서면 소명을 2회 수행하였으며 1차는 현장평가 이후라고 제시하였으나 평가결과(안)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소명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2차는 소명검토회의 이후라고 하였으나 추진절차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소명 방식·내용·운영 결과 등 구체적인 절차 및 활동내역이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운영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절차·체계보고서(상위평가용보고서), p.34) 자체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위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 평가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2/13인, 약 15%),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개선노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상위평가용보고서, pp.35-36) 평가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책임평가 위원제를 운영중이나, 운영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비효율적임

- 평가위원(총13인) 중 42%(5인)을 책임평가위원으로 지명하였으나, 평가위원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역할의 혼선이 불가피함

- 성과목표1과 3은 부문별 2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책임평가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종합분석, 현안대응 및 기관장 기관발전기여도 등에는 책임평가위원이 배정되지 않음

- (절차체계보고서(상위평가용보고서), p.38 / 청렴·윤리서약서)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은 청렴·윤리서약서 제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인 등을 통해 이행되고 있으나, 그 적용 방식이 평가위원 개인의 자기확인 및 개별 점검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원칙이 자체평가 운영 전반에 걸쳐 사전 모니터링 체계로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위원 운영 절차의 절차적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자체평가보고서, p.77) 자율영역 평가는 지침상 성과의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기관 내 역할과 책임(R&R) 기여도 중 일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모든 평가에서 R&R 기여도를 배제하고 특정 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평가 항목 선택의 기준, R&R 기여도 배제의 판단 근거 및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적정성에 한계가 있음

● 평가조치 이행실적

- 직전 기관직전 기관운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과 관리체계를 포함하여, 평가조치 이행 실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예: 전담부서 지정, 이행점검 절차, 내부 보고 및 환류 체계 등)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점검 실적, 정량적 성과관리 지표, 평가위원 풀 확충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의 운영 현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특히 차기 평가에서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전문가 및 여성 비율 확대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나 실행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완료'로 진단된 사례가 확인되어, 평가조치 이행 실적의 적절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재평가에서 감사원 지적 7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조치 이행실적의 근거가 되었으나, 실질적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자체평가보고서에 보완하고, 재발방지 관련 이행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③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가점 항목)

-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 해당사항 없음

④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및 이해 용이성(감점 항목)

- 평가보고서의 논리성·객관성
 - (자체평가보고서, pp.61-62) 'IAEA RoH 앵커센터 지정'은 자율영역 3과 기관장 기관 발전 기여도 항목 모두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 동일 성과가 중복 활용되고 있음. 동일한 성과가 복수의 평가 항목과 연관될 수는 있으나, 각 평가 항목의 목적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과의 의미와 기여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평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등급과 평가의견·근거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등급부여의 논리적 근거가 불명확함
 - (자체평가보고서, p.60) 성과목표 1 「우수 기획력을 갖춘 R&D 조직 확립」에 대해 질적 우수성 B등급을 부여하면서, '브레인 조직 정비를 통해 연구기획 역량 향상의 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연구 기획력 향상이나 경영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평가하고 있음.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부여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평가 내용과 등급 간의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반 조성 단계의 성과를 B등급으로 평가한 판단 기준과 논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자체평가보고서, p.62) '조직 분열·불신 해소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평가 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관장 역할이나 기관 발전 성과는 불명확하다'고 기술 하여 평가 의견 간 상충되는 판단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분·설명하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p.60, p.69) 성과목표 2 「방사선의과학 R&D 재정수지 개선」에 대해 A등급을 부여하였으나, 종합분석(p.69)에서는 '자체 수익 확보 및 재정 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평가등급과 분석

내용 간 괴리가 존재함. 재정수지 개선과 관련한 정량적 목표 대비 달성 수준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등급 부여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보고서, p.61) 성과목표 3의 적절성에 B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급 부여 사유 및 근거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하고 있어 등급부여의 타당성이 부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p.137) 기관의 당면 과제에 따른 정책 제언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외부 및 언론기관에서 지적된 반부패, 기관청렴도 제고 등의 이슈에 대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지 않음
-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 K-BioDos, KOLAS, Theranostics, BNCT(붕소중성자포획치료), RoH(Rays of Hope), GMP 전문용어 등은 약어집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각 용어들이 처음 등장할 때 각주 증을 통해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용어 설명외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국내 생물학적 선량평가 네트워크 (Korean Biological Dosimetry Network)" 등과 같은 전문용어는 기능적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함
 - 보고서 완성도 제고를 위해 비문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보고서, p.104)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원자력병원의 구축과 함께 기존의 병원 시설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같이 추진하는 계획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체평가보고서, p.111) “기관의 다양한 활동 등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질적 우수성 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R&R 기여도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대비 실적을 제시하면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실적이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체평가보고서, p.107) 해당 평가 항목은 정성평가를 통해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의견에서 “정량적 목표를 모두 수행하였음.” 과 같이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전면에 제시하고 있어 정성평가의 취지와 평가 관점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최종결과

〈표 2-4〉 '25년 3차 기관평가 자체·상위평가 최종결과

평가 유형	소관기관	출연기관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점수조정〉
기관운영 평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종합기술원	73.45		77.00 (적절)		73.45 (보통)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기	76.98	정기	62.75 (부적절)	72.98 (보통)
			재평가	75.98	재평가	71.75 (적절)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4.36		75.50 (적절)		74.36 (보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50		80.00 (적절)		81.50 (우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8.10		80.50 (적절)		78.10 (보통)
		한국화학연구원	76.75		75.50 (적절)		76.75 (보통)

※ 상위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 판단하여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점수·등급을 인정하고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 판단하여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상위평가 단계에서 자체평가 오류 및 객관성 부족 사항 등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최종 점수·등급 확정

부 록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25년 3차)



■ 상위평가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성근 총장(포항공과대학교)
- 부위원장: 신의섭 교수(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 상위평가위원(가나다순)

위원명	소속	전문분야	구분
곽상희	(주)싸이텍코리아	에너지재료	
김광무	(주)브레인유	기술사업화, 전자공학	
김규태	연세대학교	기술사업화	
김기범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	
김명신	서울성모병원	임상병리	
김영독	성균관대학교	화학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경영전략	
나준호	LG경제연구소	기술경영	
박광우	세브란스병원	방사선 종양	
박문수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	
서영웅	한양대학교	생화학	
이성호	서울연구원	기술경영, 산업공학	
이세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경영학	

위원명	소속	전문분야	구분
이진욱	송실대학교	기계공학	
임욱빈	한성대학교	회계학	
정대웅	부산대학교	전자공학,시설장비	
차선신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공학	
한상연	국립공주대학교	기술경영,화학공학	
한중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화학공학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술경영,전기전자	
현덕수	(주)피엠에너지솔루션	기계공학,화학공학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5년-3차-재평가)

- ◆ 인 쇄 | 2026년 5월
- ◆ 발 행 | 2026년 5월
- ◆ 발 행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화: 044-202-6932
- 팩스: 044-202-60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 연구개발평가센터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 전화: 043-750-2363
- 팩스: 043-750-2680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

(25년-3차-재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